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홍보 및 안전교육(안 제5조 ~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만대 정도였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2019년에는 9만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 주행 가능도로 지정, 안전장구 착용의무 등 안전이행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영등포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	-----

발의년월일: 2021년 6월 일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

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및 안전교육 등(안 제5조 ~ 제6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6. 4. ~ 6. 8.)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